

제 호

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

- 명 칭:
- 소재지:
- 대표자 성명 :
- 사업 내용:
- 지정 조건: 붙임 참조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8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